

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(○○○) 비위사건 감사결과

1. 감사개요

- 기간 / 인원 : 2016.10.13.(목). ~ 10.24(월) / 4명
 - * 국립중앙박물관 종합감사(10.10~28) 일환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감사중 동 재단 사장의 성추행 피소 건이 보도(10.13. YTN)되어 관련조사 추가진행
- 내 용 : ○○○ 사장 성추행 등 피소 건 관련 사실 확인, 인사비위 및 전횡 등

2. 감사결과 : ○○○ 사장의 직원 성추행 · 성희롱, 인사비위 혐의 확인

- (성추행 · 성희롱) 신입 여직원 환영회식(15.2), 공연연습 점검 후 회식(15.3), 속초 워크샵(15.7), 강화도 워크샵(16.4), 신안해저선 전시 후 회식(16.7.) 등 수차례 성추행 · 성희롱(피해자, 참석자 증언)
 - ○○○ 사장은 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해라고 주장하나, 참석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
- (채용관련 비위) 지원 서류를 가져오게 해서 1차합격자를 사장이 심사전에 지정하는 등 인사관리규정 수차례 위반(AA팀장 진술), 재단의 채용업무 방해
 - *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조③(채용계획수립), 제8조 ③서류심사에 의한 1차합격자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평균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(중략) 선발한다
 - **1차 서류시험 통과자 172명, 최종합격자 82명(○○○ 사장 취임~'16.10월 현재)
 - 또한 문화사업부장 ◆◆◆ 채용시 사장 임명 전 부터 아는 지인임에도 사장이 면접심사에 참여,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
 - *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제①항 4호 학연, 지연, 종교, 지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. ③(중략)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**○○○사장이 예전에 운영하던 카페(◆◆◆), 밴드활동(□□□)시에 알게 된 지인 또는 대학 후배
- (사직강요 등 인사전횡) △△△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사직 강요(녹취록 존재)와 직원들에 대한 부당전보 사례 다수

* 또한 공연기획으로 입사한 △△△에게 수습 1개월 연장(회식때 먼저 갔다), 발령 대기(인사말 생략 이메일 2건), 전보발령 5회(상품포장, 방문객수 확인, 식자재 배달, 야외매대 음료판매) 등 부당 전보인사 조치

- ○○○ 사장은 이직설득이며 인생선배로서 대화한 것이고, 정당한 인사조치 라고 주장하나,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과 장시간 사직 강요 정황이 존재하고 경위서 징구과정과 배정업무 등을 볼 때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됨.

* 홍보담당 ☆☆☆(5회 전보, 상품진열, 급여-2011년 창립우수 직원 선정), 홍보마케팅 ▼▼▼(3회 전보, 식자재배달, 야외매대 음료판매)의 전보에 대해 ○○○ 사장은 능력부족에 따른 조치라 주장하나, “☆☆☆이 스스로 만나가니 인사발령을 낸 것”이라는 사장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(●●●)이 있으며, ▼▼▼의 경우 팀장에게 매대업무를 시키라고 사장이 직접 지시하는 등 전보를 퇴사 압력 수단으로 부당활용

○ (기타) ①■■■■**(여. **세)에게 밤늦은 시간에 술마시자며 자기 집 근처로 오라는 카톡을 보냄/사장실로 불러 직원들 뒷담화/이직의사 전달시 무릎 위에 있는 자기 손을 사장이 감싸서 불쾌했음 ②사장이 ○○○에게 ■■■■■로 부터 받은 양주선물(사진)을 보여줘서 ○○○이 명절 때 인사 못 드렸다고 하였더니, ‘택배가 있잖아’ 라고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함.

* 재단행동강령 제15조 제②항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

** ■■■■는 사장의 잦은 술자리동석 요구, 직원들을 부당하게 질타하는 사장의 모습 등을 보고 입사 한달 만에 퇴사

3. 조치계획

○ ○○○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(박물관정책과)

- 채용관련 비위혐의 직원(AA팀장)에 대한 징계 조치

○ ○○○ 사장 직원채용 관련 업무방해 수사의뢰(감사담당관실)

※ 관련 규정

- 재단 정관 제9조 제2호(임원의 해임)
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

- 재단 윤리강령 제6조 및 제13조(성희롱 등 금지)

-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조(채용계획수립)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제15조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